

제16권 3호

2026. 2. 9~2026. 3. 2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금융 분야의 과제
- 이슈분석 韓 토큰증권 시대 개막: 美·日에서 찾는 시사점
- 금융경영브리프 日 SMCC, 신분증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실험 착수
HSBC, 글로벌 자산허브로 부상하는 UAE 진출 확대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류창원(cwryu)

이슈분석

연구위원 신상희(sanghuishin)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방승연(sybang)
연구원 이시은(sieunyi)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금융 분야의 과제
- 04 **이슈분석** 韓 토큰증권 시대 개막: 美·日에서 찾는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日 SMCC, 신분증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실험 착수
HSBC, 글로벌 자산허브로 부상하는 UAE 진출 확대
- 12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다음호(제16권 4호)는 설날 연휴로 인해 3월 3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금융 분야의 과제*

류 창 원 연구위원

AI의 발전이 눈부시다.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시대가 도래하고, 나만의 비서인 AI Agent가 업무구조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혁신산업에서의 규제는 양면성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산업진흥의 토대와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되었다. 일부 보완은 필요하나 금융분야 AI 규제도 체계화되고 있다. 금융산업은 AI의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금융회사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람과 함께 가는 AI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 도래,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새해 들어서도 AI의 발전은 눈부시다. 2026년 동계 CES는 가전전시회가 아니라 AI 경연장이었다. 특히 다소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의 발전은 놀라웠다. 로봇이 차를 조립하는 풍경은 더 이상 공상과학만화가 아니다. 그런데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알 수 없는 오류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 챗봇 같은 서비스와 비교할 때 피지컬 AI는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에서는 나만의 비서인 AI Agen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AI가 주요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은 검증과 책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 형태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원칙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해 1월 21일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 AI 기본법은 AI를 정의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닦는 법이다.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도 포함되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글로벌 AI 규제는 약화되었다. AI 법안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EU는 역내 AI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시행을 2027년 8월로 미뤘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약화시켰다.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국내 AI 기본법의 빠른 시행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당국도 기반 마련에 의의를 두되 규제를 최소로 적용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와 AI Agent 시대가 도래, AI의 안전 담보 장치가 필요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산업 진흥과 부작용 방지 내용을 포괄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산업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 AI 기본법의 지속 보완 필요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며, AI 기본법은 건전한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에서 규제는 양면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영국 ‘적기법(The Red Flag Act)’은 규제가 기술발전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다. 반면 1926년 미국의 항공법(Air Commerce Act)은 추락사고가 빈번했던 항공 분야에 안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에 자본과 금융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AI 기본법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AI의 성능을 제한하기보다는 부작용 관리에 집중한다면 산업발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

다시 말하면 AI 기본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 속에서, 산업진흥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 간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기술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지녀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도 중요하다. ‘고영향 AI’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이나 인프라 제공 등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 금융분야 AI 규제도 정립되는 개념 구체화 및 정책 지원 필요

금융 분야에서도 AI 규제 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정비 필요

AI 기본법 제정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AI 규제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AI 활용 7대 원칙과 준수사항을 제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실무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제시하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발표했다. AI RMF에 따라 금융회사는 AI의 위험에 대한 식별·평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의 대응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상세 가이드라인 제공, 전문 인력 및 인프라 지원 등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고영향 AI에 포함된 대출심사의 경우 지급 보증, BNPL, 리스·보험 계약 심사 등까지 포괄하는지 불분명하다. 금융당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하여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대출심사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정비에 따라 생성형 AI서비스 출시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편 지난해 8월 발표된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혁신금융 지정 없이 클라우드 기반 SaaS를 내부 업무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성형 AI서비스를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은 제약이다. AI 기본법 제정 이후 가이드라인 등 규제 정립과 금융사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의 완화도 필요해 보인다.


∴ 금융업은 AI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금융업은 AI의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업무를 자동화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환각(hallucination) 등의 우려로 대고객 서비스보다는 문서 인식 자동화, 심사 업무 자동화 등 주로 운영효율성 제고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었다. 역시 운영에 관련된 보안, KYC, AML 등 복잡한 업무도 AI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되면 AI를 활용한 대고객 서비스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고객서비스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금융 상품 추천, 자산관리 상담이나 투자의사결정 등의 영역에서 AI가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이 모두 답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고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은행 점포에서의 로봇 활용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 금융회사는 AI 전환을 추진하되 AI와 사람의 공존을 모색해야

법이 정비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AI를 활용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AI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AI 기본법과 AI 가이드라인, AI RMF를 반영하여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식별·관리, 이용자 보호, 문서 작성·보관을 포함한 운영·관리·감독 체계 등이 필요하다. AI Agent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Agent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 책임질 단계를 명확히 지정(Human-in-the-Loop)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명가능한 AI(XAI)’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업의 AI 전환에서 핵심은 사람이다. 금융서비스의 본질은 AI를 통한 정보 전달이 아닌 고객의 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에 있다. AI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AI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사람과 AI가 공감과 정보라는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형 영업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직원들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면 AI 전환은 성공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업무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AI 활용 교육과 새로운 직무에 대한 재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산업은 AI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

AI 규제가 구체화되면 대고객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

금융회사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신뢰라는 금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사람만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AI 전환을 추구할 필요

韓 토큰증권 시대 개막: 美·日에서 찾는 시사점

신상희 연구위원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최근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며 한국도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은 대형 금융사가 발행하는 MMF 토큰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한 반면, 일본은 부동산 및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이 발행·유통되고 있다. 조각투자과 함께 성장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일본과 유사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당국과 금융사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은 스마트계약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개선할 잠재력을 보유

-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
- 토큰증권은 스마트계약, 원자적 결제, 자산유동화·소액투자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
 - (스마트계약) 요건 충족 시 사전에 정의된 계약 조건이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유통·수익지급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여 운영비용을 절감 가능
 - (원자적 결제) 디지털통화·자산 간의 DvP(인도 즉시 결제)를 통해 자산의 인도 후 자금의 정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유동성 관리를 효율화
 - (자산유동화·소액투자) 미술품·부동산 등 거액의 자산에 관한 권리를 분할하여 토큰화함으로써 유동화가 가능하며 다수의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

■ '26년 1월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한국도 '27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개막될 예정으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선결요건을 미리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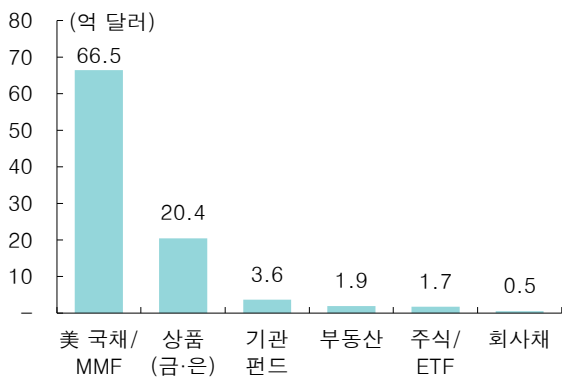
-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규제('26.1.15)
 - 증권의 전자등록계좌부로서 분산원장을 인정함으로써, 증권의 특성에 따라 더욱 적합한 발행형태(실물, 전자, 토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한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시행령·규정 등이 완비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27년부터 급격히 성장해 '30년 367조 원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¹⁾
 - 해당 전망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금융·실물자산의 상당 부문이 토큰화되면서 토큰증권 시장이 '30년 GDP의 14.5%를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제시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방향성이 형성·결정되는 현재, 이미 토큰증권을 도입한 美·日 사례를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할 필요

[1] 신석영(2023) “토큰증권(ST) 시대의 개막: 일상이 금융화되는 세상”, 하나금융연구소 Knowledge+ 제23-7호

■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였던 미국은 BlackRock, JP Morgan 등 대형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MMF 토큰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 중

- (규제) 미국은 토큰화 여부와 무관하게 토큰증권을 증권법에 따라 규제해 왔으며 최근 CLARITY 법안을 통해 토큰증권의 영역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
 - 美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권리의 기록방식(실물, 전자등록, 블록체인 등)과 무관하게 실질(증권성)에 따라 증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토큰증권도 증권이라는 입장 유지
 - CLARITY 법안(상원의원 Tim Scott 수정안)은 증권·파생상품 등을 토큰화한 ‘금융상품토큰’(Tokenized Financial Instrument)을 정의하고 SEC·CFTC가 규율하도록 명시
- (시장) 미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금융상품토큰 중심으로 발전
 - '26년 초 미국의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는 약 99.8억 달러(약 14.4조 원)였으며, 이중 70.2%(66.5억 달러)가 美 국채 토큰 또는 MMF 토큰에 해당
- (사업자) BlackRock, JP Morgan 등 전통적인 대형 금융회사가 MMF 토큰 발행
 - (BlackRock) 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BUIDL)는 기관투자자용 MMF 토큰으로 토큰의 가치를 \$1로 유지하며 매월 BUIDL 토큰으로 배당을 지급('24)
 - (JP Morgan) 기관투자자용 MMF 토큰인 ‘My OnChain Net Yield Fund’(MONY)를 출시하고 기관용 단기자금관리 플랫폼 Morgan Money를 통해 유통('25.12)
 - (Franklin Templeton) BENJI는 Franklin 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FOBXX)와 1:1로 대응되는 MMF 토큰으로 美 일반투자자가 BENJI 앱을 통해 직접 투자 가능
- (인프라) 예탁결제원·거래소 등 시장 인프라 기관도 토큰증권을 적극적으로 지원
 - 美 예탁결제원(DTCC)은 증권사 등이 美 국채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SEC의 비조치의견서까지 확보한 상황('25.12)
 - 美 Nasdaq·NYSE는 주식의 결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연중무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ETF 토큰의 장내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SEC에 제출

■ 美 기초자산별 토큰화 자산(RWA) 시가총액·증가치



주 : 미국 발행자 또는 미국 내 개인·법인 대상 판매가 가능한 상품만 고려
 자료 : RWA.xyz(기준일자: '26.1.26)

■ 美 주요 국채·MMF 토큰 상품

상품 Ticker	발행사(운용사)	시가총액(억\$)	투자 대상
BUIDL	BlackRock	16.8	美적격투자자
USDY	Circle	12.8	미국 내 불가
BENJI	Franklin Templeton	8.9	美개인/법인
OUSG	Ondo Finance	7.3	美적격투자자
WTGXX	Wisdom Tree	7.3	美개인/법인
USTB	Superstate	6.5	美적격투자자
FDIT	Fidelity	2.0	美적격투자자
USTBL	Spiko	1.9	美개인/법인
TBILL	OpenEden	1.0	美적격투자자
MONY	JP Morgan	1.0	美적격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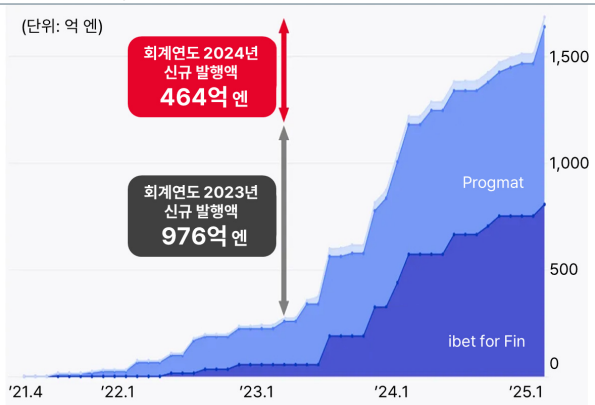
자료 : RWA.xyz

[2]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26) “Statement on Tokenized Securities”

■ 일본은 '19년부터 토큰증권을 제도화하였으며, 대형 금융사의 토큰화 인프라를 통해 부동산 및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는 작은 편

- (규제) '19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20년 시행)을 통해 토큰증권이 제도화³⁾
 - 日 금융상품거래법은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하고, 토큰화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 전자기록이전권리(신탁수익권 등) 등으로 분류
 - 토큰증권을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증권회사 등)가 취급 가능한 1항 유가증권⁴⁾으로 간주하여 최저자본금(5,000만 엔)·자기자본비율 모니터링 등 강화된 사업자 규제를 적용
 -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2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신탁수익권 등이 토큰화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유통·노출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임
- (시장) '24년 日 공모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1,682억 엔(약 1.6조 원)으로 제한적이며, 부동산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을 중심으로 발전(Boostr)
 - '24년 일본의 공모 토큰증권 시장 발행액의 약 89%(417억 엔)가 도쿄·긴키·규슈 지역의 주택, 호텔, 상업·물류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 수익증권발행신탁에 기반
 - '23년은 Hitachi가 탄소배출규모를 추적 가능한 녹색채권토큰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하는 등 회사채 토큰 발행량이 연간 토큰증권 발행규모의 13%(825억 엔)을 차지
 - 그 외 영화 투자 수익권에 대한 토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프라 사모펀드 토큰 등이 일본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며 주목을 받음
- (사업자) 대형 금융기관 주도로 토큰증권 발행 지원·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운영
 - 일본의 토큰증권은 Boostry 컨소시엄(Nomura 등)의 'ibet for Fin'과 MUFG 컨소시엄의 'Progrmat'를 통해 토큰화·발행되며, 각 플랫폼은 공모 발행량의 50%·48%를 점유
 - 日 ODX(오사카디지털거래소)의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인 'START'가 '23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거래 규모는 6종목, 3억 2,600만 엔('24)로 미미함

■ 日 토큰증권 시장 규모



자료 : Boostry(2025)

■ 日 주요 토큰증권 상품

구분	발행일	프로젝트명	발행규모 (억 엔)	비고/특징
대규모 발행	'23.8	KDX/도쿄 콘도미니엄	134	일본 내 최대 규모
	'23.12	Hitachi ST 회사채	100	기관투자자 대상 녹색채권
	'24.2	MDM/ 나수 아울렛몰	114.5	최초의 상업용부동산 ST
기초 자산 확대	'24.7	영화 보물섬 제작위원회 투자	3.68	굿즈+이벤트 등 팬덤형 혜택 결합
	'24.12	태양광발전시설 사모펀드 ST	-	미즈호증권, 블루스카이자산운용

자료 : Boostry(2023, 2024), 언론보도 종합

[3] 이병관(2024)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KIF 금융브리프 33권 12호(2024.5.25~6.7)

[4] 1항 유가증권이란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전통적인 증권을 의미하며, 2항 유가증권은 신탁수익권, 집단투자스킴지분권 등 투자성·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증권과 유사하여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권리를 의미(「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①·②항)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미국보다는 일본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기초자산) 국내 토큰증권 산업은 전통 증권(주식·채권·펀드 등)의 토큰화보다 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각투자과 결부되어 도입·발전됨
 - 국내에서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에 관한 수익·권리사항이 비정형적인 신탁수익증권(부동산, 미술품 등) 또는 투자계약증권(한우·한돈 등)에 적합한 발행형태로 간주
 - 개정 「전자증권법」상 조각투자 상품은 반드시 토큰증권으로만 발행되어야 하지만, 전통 자산의 토큰증권 발행은 시행령상 정하는 주식 등으로 제한(법 23조의2 ①·②항)
- (판매규제) 기본적으로 공모를 전제하여 상품 설계·판매 등에서 투자자보호를 강조
 - 국내는 부동산·인프라 등 거액의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익권이 조각투자를 통해 분할·유동화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점에 주목
 - 실무적으로 조각투자 상품(투자계약증권)당 청약한도를 2,000~3,000만 원 내외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보호 차원의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운영 중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혁신적 기초자산의 발굴 등이 이뤄질 필요

- (규제) 토큰증권 기반 금융거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적 세부제도 수립 필요
 - 토큰화가 허용되는 증권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조각투자 업체가 혁신적인 기초자산·구조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심사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
- (금융사) 일본처럼 유망한 토큰증권 기초자산을 발굴하고 맞춤형 마케팅으로 손님에게 소구하는 동시에, 미국처럼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로 거래 효율성을 제고
 - 일본은 토큰증권 발행·모집과 관련하여 굿즈(영화 보물섬), 시설 이용권(쿠사츠온천) 등을 결부한 마케팅으로 청약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및 효용을 제고
 - 미국 대형 금융사는 MMF 토큰을 통해 초과 현금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고 거래(자금 이전, 환매, 정산 등)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을 지원⁷⁾

■ 韓·美·日 토큰증권 제도 및 현황 비교

	한국	미국	일본
규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증권법」을 통해 토큰증권 인정 • 단, 토큰증권의 기초가 되는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형태에 무관하게 실질이 증권이라면 「증권법」으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규제
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조각투자사) • 계좌관리기관(증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SPV 등이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사모의 경우 면제) • Securitize 등은 토큰화 플랫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사·운용사 등이 발행하고 증권사가 청약·모집 • ibet for Fin-Programat은 토큰화 플랫폼
유통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과 유통의 분리 강조 • 신탁수익증권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을 통해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S(대체거래소) 인가를 받은 브로커-딜러(broker-dealer) • 거래소, 금융사, 가상자산업자 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S(시설거래시스템)을 통한 유통 - ODX(오사카디지털거래소)의 START가 대표적인 PTS에 해당
대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미술품, IP 등(신탁수익증권) • 한우·한돈 등(투자계약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토큰이 주류 • 최근 주식/ETF 토큰 발행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수익증권발행신탁 중심 • 그 외 회사채, 영화 투자수익권, 태양광 인프라 등도 확인됨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日 SMCC, 신분증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실험 착수

방승연 수석연구원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는 신분증 기반 JPYC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실험을 본격 시작했다. SMCC의 stera 단말기에 마이넘버카드를 태그해 공적 개인인증으로 이용자 등록과 결제를 처리하고, 별도 모바일 앱 없이 블록체인 상 잔액 이전과 현금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를 검증했다. 단계적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향후 인바운드 결제까지 포함하는 실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은 이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시 기존 인증체계 및 결제 인프라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SMCC)는 스테이블코인(JPYC) 결제 실증실험을 진행해

- '26.1월 SMCC는 후쿠오카시에서 자사 결제 단말기 stera를 활용해, 기존 결제 인프라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실험을 진행
 - 후쿠오카 농구경기장에서 마이넘버카드²⁾를 이용해 사전 등록을 완료한 방문자에게 JPYC를 지급하고, 경기장 내 매점 stera 단말기에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폰 구동 없이 마이넘버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것만으로 개인 인증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정산이 완료
 - 공적 개인인증(JPKI) 플랫폼 '마이너 월렛'을 통해 이용자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대금 채권 양수와 스테이블코인 수령 및 현금 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

■ 이는 日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오프라인 결제 상용화 가능성 검증 목적

- 일본은 '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한 이후 '24.6월부터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착을 유도
 - 日 금융당국 및 금융사는 발행·유통 제도 정비와 함께 준비자산 관리, 결제 정산 인프라 연동 등 운영기반을 완비하여 민간결제사업자의 실증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아울러 고령자·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용 앱이나 모바일 월렛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 결제방식을 핵심 설계방향으로 설정

[1] “三井住友カードが実証実験、ステーブルコインで店舗決済”, 일본 주간금융재정사정, 2026.1

[2] 마이넘버카드는 IC칩에 전자증명서를 내장해 신분증명과 공적 개인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공적 신분증(Digital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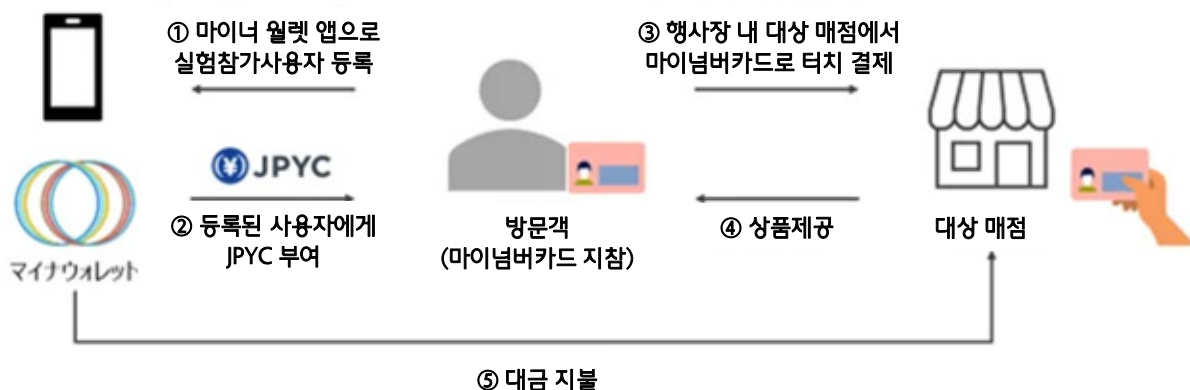
■ 향후 SMCC는 결제처 확대와 방일 외국인의 인바운드 결제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결제 빈도, 이용자 유형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술 안정성과 운영 적합성을 검증하는 다단계 실증실험을 전개할 예정
 - 추후 상업시설, 관광시설, 지자체 연계 디지털 지역화폐 및 공공요금 납부 등 일상적 결제 환경 전반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는 방일 외국인의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결제를 포함하는 인바운드 결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외국인 이용자는 환전이나 현금 사용 없이 USDC 등 디지털 자산을 결제에 이용하고, 가맹점은 엔화로 정산받는 결제 모델의 운영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

■ 인증 기반의 결제 구조와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은 국내 금융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

-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법제화시 금융권은 기존 고객 인증-KYC 체계를 결제 단계에 연계함으로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속한 결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
 - 통합인증서, 실명계좌 등 현행 공인인증 인프라를 스테이블코인 월렛 등록 및 결제 인증 절차에 그대로 활용할 경우 신규 인증체계 도입 부담을 최소화
- 아울러 기존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단계적 기술 검증과 실사용 테스트를 병행하는 효율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
 - 카드사 POS 및 지역화폐 기반 QR 결제망 등에 스테이블코인 정산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인프라 변경 없이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환경 구축이 가능⁴⁾

■ SMCC 오프라인 결제 실증실험의 결제 흐름



자료 : PRTIMES

³⁾ 외국인 방문객이 체류국 내에서 자국 또는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해 결제하고, 가맹점은 현지 법정통화를 기준으로 정산 받는 결제 방식

HSBC, 글로벌 자산허브로 부상하는 UAE 진출 확대

이 시 은 연구원

HSBC는 UAE에서 자산운용 사업을 공식 출범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 가운데 최초로 10개의 역내 투자펀드를 출시했다. 이는 HSBC의 중동-아시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UAE가 글로벌 부(富)의 허브로 성장함에 따라, HSBC는 UAE를 중심으로 여수신 중심의 전통 은행업에서 글로벌 자산관리 및 운용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도 국내 자산가의 해외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단순 해외 지점 확대를 넘어선 질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 HSBC는 UAE에서 자산운용을 출범, 글로벌 자산운용사 최초로 역내 투자펀드를 출시^[1]

- HSBC는 '26.1월 UAE에서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중동 지역에 특화된 투자 운용 플랫폼을 구축하며 비즈니스를 확대
- HSBC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먼저 현지 규정에 따른 역내(onshore) 투자펀드를 출시하며 UAE 내 자산관리 분야를 선도
 - 단순 역외(offshore) 펀드 판매에서 벗어나 UAE SCA(증권상품청)에 등록된 10개의 역내 투자펀드 라인업을 구축하여 현지 공략을 강화

■ HSBC는 UAE를 중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핵심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

- HSBC는 UAE에서 여수신 중심의 은행 업무를 넘어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글로벌 자산 허브로 부상하는 UAE 내 입지를 강화
 - HBME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로 HSBC 중동 지역 총괄 법인 본사를 이전('16년) 하며 UAE가 본격적으로 HSBC의 MENAT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2]
 - 최근에는 HSBC가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두바이에 웰스 센터(wealth center)를 설립 ('25.9월)하며 글로벌 자산관리 및 프리미엄 बैं킹 사업을 확대
- HSBC는 조작사업 개편('24.10월)^[3]을 통해 중동-아시아를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중동-아시아 교차점에서 발생한 막대한 자금흐름을 선점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4]

[1] "HSBC launches UAE asset management business to tap into wealth influx", Reuters, 2026.1.12

[2] HBME(HSBC Bank Middle East)는 HSBC가 중동은행(BBME)을 인수(1959년)하며 생긴 HSBC의 중동 지역 담당 자회사로, MENAT(Middle East, North Africa, and Turkey)의 전략적 중심지로 역할

[3] "We're simplifying to accelerate our strategy", HSBC, 2024.10.22, 이 구조조정은 '25.1월부터 전면 시행

[4] "HSBC is 'halfway through' revamp of its global business, says group CEO", The National News, 2025.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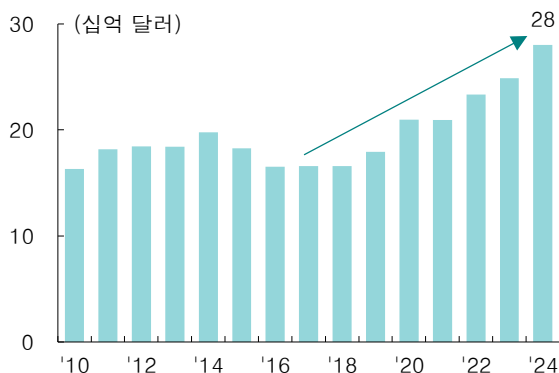
■ UAE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친(親)시장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사의 진출을 가속화

- UAE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자산가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전세계 부(富, wealth)의 중심지로 성장
 -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면제이고, 법인세도 프리존⁵⁾에서는 면제, 그 외 지역도 일정 이익 이상에만 저율(9%) 과세하는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
 - 장기 거주권 보장(골든·그린 비자), 패밀리 오피스 맞춤형 제도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2024년 전 세계에서 UAE가 두 번째로 높은 부(富) 증가율을 기록(11.1%)
- UAE는 최근 자본시장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UAE를 중동 거점으로 하는 진출 및 투자 가속화를 유도
 - 자본시장청(CMA) 설립과 자본시장법 개편⁶⁾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금융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

■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지점 확대를 넘어선 글로벌 자산관리·운용 등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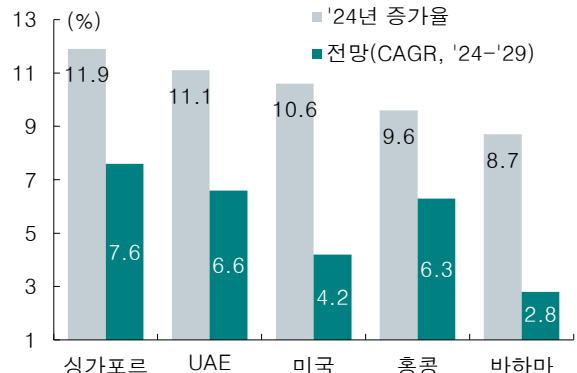
-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은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자산관리·운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자산 시장 성장에 따른 국내 자산가의 해외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 자산가의 국내외 자산관리·운용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
- 중동-아시아가 새로운 고액자산가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현지 유동성을 흡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등으로의 진출 검토 필요
 - 해외에서 여수신 중심의 은행업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자산운용 등 다양한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검토하고, 나아가 역대 펀드 등 현지화 서비스 확대도 고려할 필요⁷⁾

■ HSBC의 UAE에서의 손님 예금 추이



자료 : HSBC Annual Report 취합

■ 전 세계 부(wealth) 증가율과 전망(상위 5개국)



자료 : BCG Global Wealth Report 2025

⁵⁾ 프리존(Free Zone)이란, UAE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한 특별 경제 구역으로, 연방 상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독자적인 법규로 운영되며 외국인 100% 소유, 세금 면제 혜택 등이 보장

⁶⁾ Federal Decree-Law No.32&33 of 2025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 26.1.1부로 시행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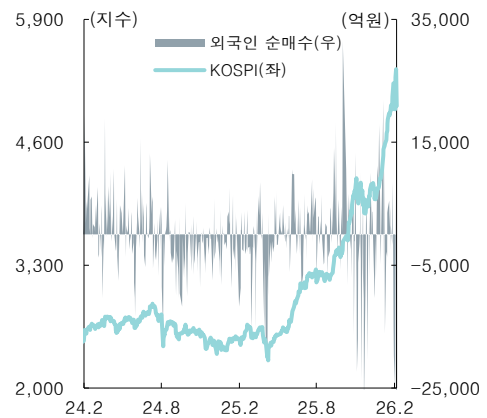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12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1월 30일	2.55	2.73	2.94	3.66	3.14	3.44
2월 2일	2.55	2.74	2.95	3.67	3.15	3.45
2월 3일	2.54	2.74	2.97	3.71	3.19	3.50
2월 4일	2.53	2.75	2.98	3.73	3.21	3.53
2월 5일	2.54	2.75	2.97	3.72	3.20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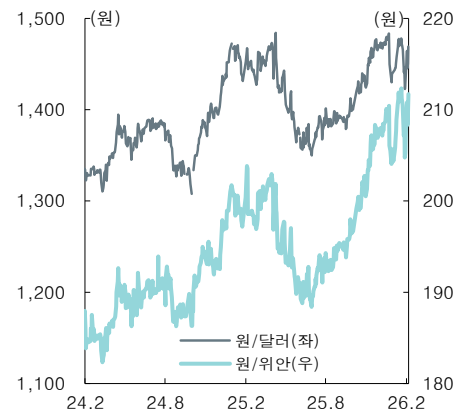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12월말	4,214.2	132,135	408	-4,886
1월 30일	5,224.4	354,934	863	-19,792
2월 2일	4,949.7	320,906	573	-25,330
2월 3일	5,288.1	300,160	673	7,170
2월 4일	5,371.1	304,335	790	-9,378
2월 5일	5,163.6	323,856	912	-50,385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12월말	1,439.0	916.1	204.4	1,686.3
1월 30일	1,439.5	930.1	207.1	1,706.2
2월 2일	1,464.3	941.1	210.8	1,726.5
2월 3일	1,445.4	928.1	208.3	1,708.5
2월 4일	1,450.2	924.1	208.9	1,711.7
2월 5일	1,469.0	935.3	211.7	1,7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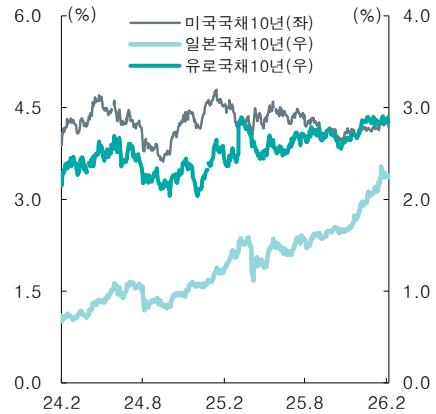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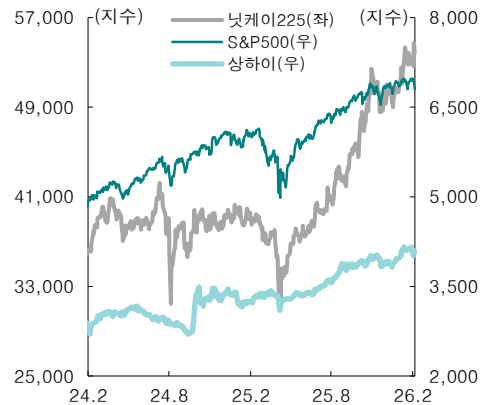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5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12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1월 30일	3.64	3.84	3.52	4.24	2.25	2.84
2월 2일	3.64	3.82	3.57	4.28	2.24	2.87
2월 3일	3.64	3.81	3.57	4.27	2.27	2.89
2월 4일	3.64	3.81	3.55	4.27	2.26	2.86
2월 5일	3.64	3.81	3.45	4.18	2.24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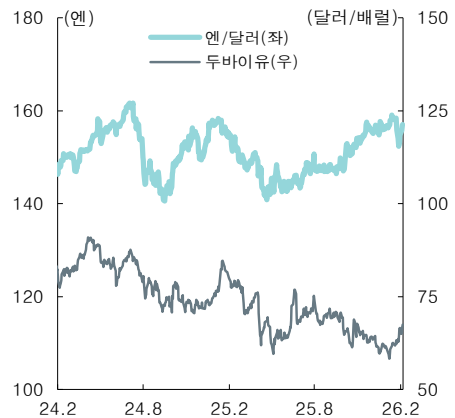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12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1월 30일	6,939.0	53,322.9	4,117.9	5,947.8
2월 2일	6,976.4	52,655.2	4,015.7	6,007.5
2월 3일	6,917.8	54,720.7	4,067.7	5,995.4
2월 4일	6,882.7	54,293.4	4,102.2	5,970.5
2월 5일	6,798.4	53,818.0	4,075.9	5,925.7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12월말	156.63	1.175	61.6	4,341.1
1월 30일	154.76	1.185	66.6	4,745.1
2월 2일	155.58	1.179	65.0	4,652.6
2월 3일	155.74	1.182	65.1	4,935.0
2월 4일	156.92	1.180	66.8	4,950.8
2월 5일	157.04	1.178	67.4	4,722.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2월 6일 인쇄

2026년 2월 9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